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 3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양교사의 직무 규정 등〉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57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양교사의 직무 규정	2
2.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변경 등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20.

다. 회 부 일 : 2025. 5.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영양교사의 직무 규정(안 제7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라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일부 예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양교사는 <u>학교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영양교사는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등으로¹⁾, 영양교사의 직무는 식단 작성·식재료 선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등이며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영양교사의 직무 중 일부를 법률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법률에 일부 직무만 명시될 경우,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른 직무와의 관계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문언에서 ‘등’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대표적 사항을 예시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³⁾, 열거된 직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까지 포함될

[별표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영양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1003p

‘등’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항만 예시하여 그 뒤에 ‘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정안의 입법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 직군 교사인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⁴⁾.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영양교사의 여러 가지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법률에 불명확한 직무로 인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학교구성원 간의 직무 관련 오해와 갈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아울러, 타 교원의 경우도 법률에 구체적인 직무를 직접 나열·규정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계가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등’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한다는 뜻도 있으나,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본문의 뜻으로 쓰인다.

4)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 시·도교육청

[인천·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영양교사 직무를 법률에 규정 필요

[충북]

- 수용입장과 신중검토 입장(교과교사 외 교원은 수업외에 업무는 개별법의 시행령 규정이 타당) 모두 제시(학교별 상이)

[전북]

- 개정안은 교육을 제외한 급식운영 관련 직무만 명시되어 있어 하위법령에 따라 직무가 변동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교사의 직무까지 넣은 법률은 없음

○ 대한영양사협회: 이견없음

- 현행 「학교급식법」 상에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내용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2.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변경 등(안 제12조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기존에 학교급식은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생과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고, 식생활 지도의 내용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식품 안전관리) ① ----- ----- ----- ----- -----식품 안전관리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올바른----- ----- ----- ----- -----.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급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조문의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문과 같이 식재료 검수·보관·세척·조리 등에서 위해물질 혼입 내지 식품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뿐만 아니라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의 ‘안전관리’가 식품의 안전관리에 국한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식생활 관련 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최근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과 부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기반한 교육 추진⁵⁾ 등 타 부처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 2025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안 제12조 관련): 신중검토

- 현행 법률 제12조*의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는 식단작성 및 식재료 취급뿐만 아니라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위생·안전관리’를 ‘위생·식품안전관리’로 용어로 수정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2조에 따른 학교급식에서의 전반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아닌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로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 및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13조 관련): 이견없음

- 최근 기후·환경변화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 및 지도 시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시·도교육청

(안 제12조 관련)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전남, 경남]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식품안전관리’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은 타당하지 않음

[인천]

- ‘위생·식품안전관리’를 ‘위생관리’로 통합

[전북]

- 현행 조문을 ‘~급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수정

[울산·강원·충북·충남]

- 신중검토 및 수용입장 모두 제시(학교 또는 기관입장 상이)

[경북, 제주]

- 수용입장

(안 제13조 관련)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함

[전북]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은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학교급식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개정 필요

○ 대한영양사협회: 이견없음

- 급속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관련 교육·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여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본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184